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윤성일 소유물건(2025타경3495)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조성권

감정평가서번호: jh250224-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장환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장득환



(인)

감정평가액	일억오천만원정 (₩150,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조성권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윤성일 (2025타경3495)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3.03	2025.03.02 ~ 2025.03.03	2025.03.03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세대 이	아파트 하	1세대 여	- 백	150,000,000
	합계					₩15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PAGE : 1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소재 “포항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우방신천지타운” 제113동 7층705호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규정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제 규정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3.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4.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평가조건은 없음.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실지조사 기간은 2025.03.02.~ 2025.03.03 이고, 공부를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 교통 주위환경 등 입지적 조건,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층별 향별 효용성 일조 및 조망상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호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03.03일로 하였음.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평가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753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20번길 12		
명칭	우방신천지타운 113동 7층 705호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사용승인일자	2004.04.22
면적 (㎡)	전유면적	대지권	
	59.9922	24.6956	

II. 감정평가의 방법 및 기타사항

- 본건의 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시산가액을 산정한 후 대상 물건의 특성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선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본건 구분소유의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지사용권(대지권)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나, 귀원 요청에 의거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배분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부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거주자 부재로 본건 건물의 내부구조, 설비, 마감상태는 외부관찰, 탐문, 평가전례 등에 의거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며, 건물 구조변경 및 내부하자 유무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경매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

본건은 아파트로서 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음.

2. 평가 및 거래사례의 선정

1)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출처: 감정평가정보]

일련 번호	소재지	명칭	면적 (㎡)	평가가액	단가 (원/㎡)	기준일	비고
1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운 113동 1801호	59.99	154,000,000	3,413,375	2024. 09.12	

2)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출처: 한국부동산원]

일련 번호	소재지	명칭	면적 (㎡)	거래가액	단가 (원/㎡)	거래일 자	비고
2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운 113동 160*호	59.99	150,000,000	2,500,325	2024. 12.17	

2) 비교사례의 선택

본건 인근지역의 사례 중 기호(2)이 본건과 거래시기 및 물적유사성이 높으므로 비교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이는 바 별도의 보정요인 없음.(1.00)

4. 시점수정

1) 한국감정협회감정평가정보센터 지역별, 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1.06 = 100.0)를 활용하여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 발표된 지수를 적용함.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24.12.17~ 25.03.03)

거래시점 : 2024.12.17, 2024년11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3.03, 2025년02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01월 지수를 적용함

2024.12.17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4년11월) : 93.8

2025.03.03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1월) : 93.1

시점수정치 : $93.1/93.8 \approx 0.99254$

5. 가치형성요인비교

조건	구 분 세 부 항 목	격 차 율		비 고
		사례	대상	
단지 외부 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1.00	동일단지내 외부요인 동일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단지 내부 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1.00	대등함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대등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누 계		1.000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감정가격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비준가격

기호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면적비교	시산가격	비고
1	150,000,000	1.00	0.99254	1.00	59.9922/59.9922	149,000,000	

IV. 가액 결정 참고자료

1. 본건 및 인근 평가사례[출처: 협회 감정평가정보]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출처: 감정평가정보]

일련번호	소재지	명칭	면적(㎡)	평가가액	단가(원/㎡)	기준일	비고
1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운 113동 1801호	59.99	154,000,000	3,413,375	2024.09.12	

2. 본건 유사 동류형 아파트 시세수준 호가는 **150,000,000 ~ 155,000,000** 수준임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결정의견

상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격과 인근 평가사례 가격 수준, 수요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150,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포항시 북구 소재 포항고등학교 북측인근에 위치하는 "우방신천지타운" 113동 7층 705호로서 부근은 학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대중교통사정도 대체로 편리한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금속기와 박공지붕 22층건중 7층 705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바닥: 바닥재 및 타일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 위생설비, 소화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의한 난방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탄한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왕복4차선, 동측으로 15미터폭의 도로와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중로2류(폭 15m-2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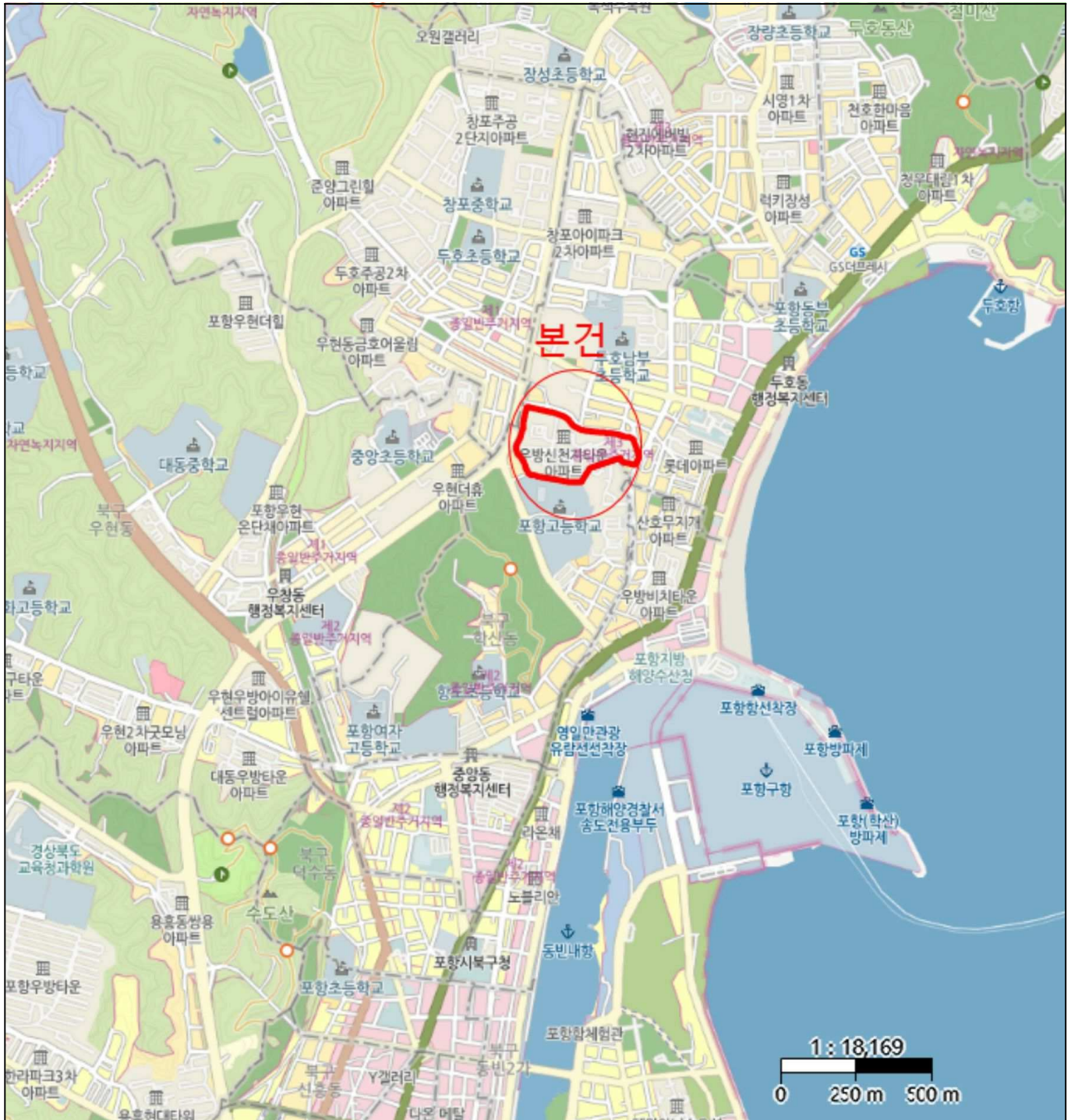
임대관계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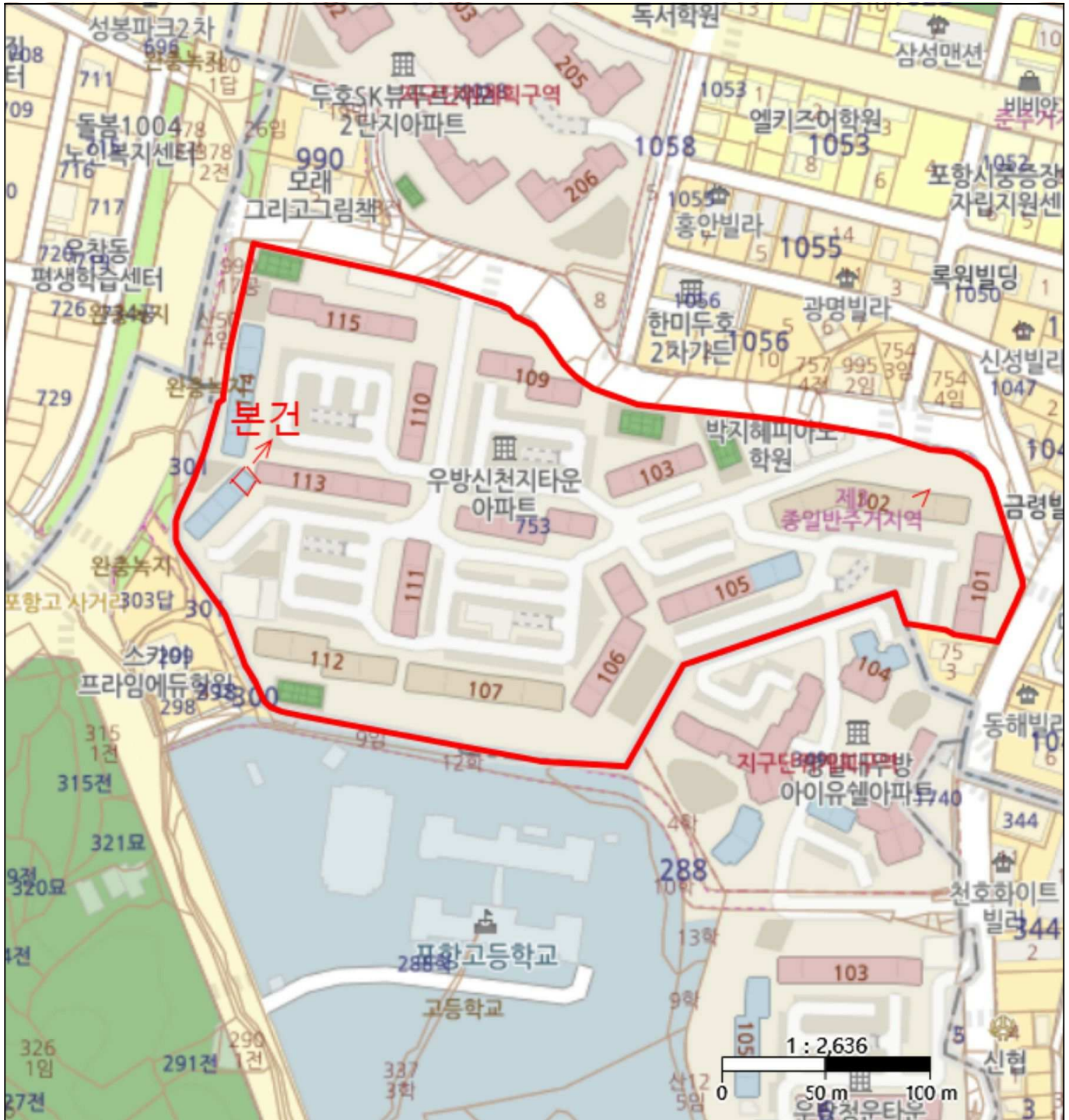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운 113동 7층 705호



위 치 도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운 113동 7층 705호
-----	--



건물개황도

아파트 호별 배치도

